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-39호

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 및 제7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8월 7일

우 정 사 업 본 부 장

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

1. 지정 기준

가. 기본방향

별정우체국의 지정은 국민이용편의 증진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체국 운영능력, 설치 위치 및 청사시설 등이 우수한 신청인에게 지정

나. 배점기준(100점)

- o 설치위치(20점)
- o 청사시설(20점)
- o 운영능력(60점)

다. 지정방법

- o 별정우체국의 지정은 관할지방우정청의『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』에서 별표의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함. 다만,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, 경력, 자격증 순으로 지정함
- o 별정우체국의 지정시 배점기준에 의한 합산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아니함
- o 별표의 『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』에 의한 평가는 『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』에서 심의 결정

2.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

가. 구성 : 관할 지방우정청 단위로 구성(7인 이내)

- o 위원장 : 관할 지방우정청장
- o 위 원 : 4,5급 공무원(제주지방우정청은 5,6급) 및 외부전문가

나. 임무 :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주요과제 심의결정

- o 별정우체국의 지정(재지정, 승계지정 포함)
- o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
- o 국장의 임용 등

3. 시행일 : 2012. 8. 7.

부 칙

1.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9-30호(2009. 8.12.)은 폐지한다.

(별표)

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배 점 기 준</th><th>배 점</th></tr>
<tr><td>설치위치</td><td>
1. 도로폭(10점)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8차선이상</th><th>6차선이상</th><th>4차선이상</th><th>2차선이상</th></tr>
<tr><td>로 타 리
(코 너)</td><td>8~10</td><td>5~7</td><td>2~4</td><td>1</td></tr>
<tr><td>도 로 변</td><td>5~7</td><td>2~4</td><td>1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※ 도로폭 기준 : 왕복차선
2. 설치지역(10점)
<table>
<tr><th>5층이상 상가건물 밀집 지역 또는 상설시장지역</th><th>상가형성지역</th><th>주택밀집지역</th></tr>
<tr><td>8~10</td><td>5~7</td><td>2~4</td></tr>
</table>
</td><td>20점</td></tr>
<tr><td>청사시설</td><td>
1. 청사구조(5점)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5년미만</th><th>5년이상 10년미만</th><th>10년이상</th></tr>
<tr><td>철근콘크리트조</td><td>5</td><td>4</td><td>3</td></tr>
<tr><td>벽 돌 조</td><td>4</td><td>3</td><td>2</td></tr>
<tr><td>기 타</td><td>3</td><td>2</td><td>1</td></tr>
</table>
2. 청사면적(10점) : 관사제외
<table>
<tr><th>45평이상</th><th>40평이상
- 45평미만</th><th>35평이상
- 40평미만</th><th>30평이상
- 35평미만</th></tr>
<tr><td>10</td><td>9</td><td>8</td><td>7</td></tr>
</table>
※ 청사구조 및 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함
(단,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의함)
3. 주차시설(5점) : 지방우정청별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 부여
</td><td>20점</td></tr>
<tr><td>운영능력</td><td>
1. 사업계획서(50점)
o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달성 전략 : 25점
o 중장기 경영수지 개선계획 : 25점

2. 자격증(5점)
o 지방우정청별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 부여

3. 경력(5점)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>o 우체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(별정우체국 직원 및 우편취급소 수탁자 포함)</td><td>5</td></tr>
<tr><td>o 국가(지방)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(사립학교교직원 포함)</td><td>4</td></tr>
<tr><td>o 기타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자</td><td>2~3</td></tr>
</table>
</td><td>60점</td></tr>
<tr><td>계</td><td></td><td>100점</td></tr>
</table>